

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6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11. 2.
제출자 : 대전광역시교육감

1. 제안 이유

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이 2006. 12. 20. 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와 다른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함.

2. 주요 내용

- 본 조례와 다른 조례에 인용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의 관련 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게 개정함.

[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(본칙) 제2조 및 부칙 제2조 제1호 ~ 제6호]

- 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」
- 「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」
- 「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」
- 「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」
- 「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」
- 「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3. 참고 사항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나. 관련법령 : 붙임

다. 입법예고 : 생략

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중 "제20조"를 "제18조"로, "제33조"를 "제30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제34조"를 "제32조"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제36조"를 "제34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제20조"를 "제18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제36조"를 "제34조"로 한다.

2.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33조 내지 제36조"를 "제32조"로 한다.

제8조, 제11조, 제14조, 제17조, 제20조, 제26조, 제29조 중 "제34조"를 각각 "제32조"로 한다.

3.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제34조"를 "제32조"로 한다.

4.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35조"를 "제33조"로 한다.

5.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29조"를 "제26조"로 한다.

제2조 중 "제37조"를 "제35조"로 하고, "제34조"를 "제32조"로 한다.

6.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29조"를 "제26조"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□ 본칙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(생 략) 1. 본청 :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<u>제20조</u> 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두는 교육감과 같은 법률 <u>제33조</u> 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. 2. 직속기관 : 각급학교를 제외한 본 청 소속의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<u>제34조</u> 의 규정에 의한 교육 기관을 말한다. 3. 지역교육청 :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<u>제36조</u> 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. 4. (생 략)	제2조(정의)(현행과 같음) 1. ----- <u>제18조</u> ----- ----- ----- 2. ----- ----- --- <u>제32조</u> ----- ----- 3. ----- --- <u>제34조</u> 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

□ 부칙

현 행	개 정 안
<p>○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<u>제29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·학교장·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·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.</p> <p>제2조(생 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"관할 각급학교"라 함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<u>제37조</u> 제1호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. 2. "직속기관"이라 함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<u>제34조</u>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을 말한다. <p>○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<u>제29조</u>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○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</p> <p>-----<u>제26조</u>-----</p> <p>-----<u>제35조</u>-----</p> <p>-----<u>제32조</u>-----</p> <p>○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-----<u>제26조</u>-----</p> <p>-----<u>제26조</u>-----</p> <p>-----<u>제26조</u>-----</p>

〈관 련 법 령〉

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제18조 (교육감) ①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·도에 교육감을 둔다.

② 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·도를 대표한다.

제26조 (사무의 위임·위탁 등)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0조 (보조기관) ①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(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·도는 2인)을 두되,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.

② 부교육감은 당해 시·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

③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.

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⑤ 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, 그 설치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.

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·운영에 있어야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·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32조 (교육기관의 설치)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

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33조 (공무원의 배치) ①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·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」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제34조 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) ①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(이하 “지역교육청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지역교육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은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,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지역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5조 (교육장의 분장 사무) 교육장은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.

1. 공·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